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35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41조 중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4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6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5조(「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6조(「예금자보호법」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7조(「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8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9조(「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	
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u> </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	
거나 <u>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u>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u>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u>
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
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ㆍ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	철회·위촉해제)
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	
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	
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	
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해임한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경우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	
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우
	_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_
	_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_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_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_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2. (생 략)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	제18조(임원의 해임)
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4.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우</u>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	
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	
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혂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 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 신체적 · 정신적 질환으로 직 <u>우</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	
임되지 아니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원) ①・② (생 략)	제20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
	흥)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	③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5.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6. (생략)	6. (현행과 같음)